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5-1290호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
2015년 11월 27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항을 개정
- 나.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주택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항을 개정함
(안 제1조)
- 나. 사업의 보고, 조사, 검사, 정산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함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(참조 : 주택과장,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5층 주택과, 01071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(☎ : 901-6825 / FAX: 901-6819 / E-mail: ccm0330@gangbu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

※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강북구 홈페이지 입법예고란(<http://www/gangbuk.go.kr>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